

국내·외 대학 간 복수(공동)학위제 운영규정

(제정 2004. 12. 23.)

(제명변경 2024. 3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「학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본교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·외 대학이나 국가, 지자체 및 산업체(이하 “교류대학”이라 한다)와의 협약에 의한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(이하 “복수(공동)학위”라 한다)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3.1.>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복수학위(Double Degree)”란 본교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각 대학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 <개정 2024.3.1.>

② “공동학위(Joint Degree)”란 본교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하나 이상의 교류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 <신설 2024.3.1.>

③ “지원자”란 교류대학에서 복수(공동)학위과정의 이수를 희망하는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. <신설 2024.3.1.>

④ “교류학생”이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선발된 교류대학 재학생을 말한다. <신설 2024.3.1.>

제3조(수학기간 및 신분)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본교에서 2년, 교류대학에서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② 공동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의 수학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「수강편람」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3.1.>

③ 복수(공동)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의 학적을 보유한다. <신설 2024.3.1.>

제4조(지원자격) 지원자는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1. 학칙에 따른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 <개정 2015.11.24.>
2. 외국대학의 경우 해당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학생 <개정 2024.3.1.>
3. 외국대학의 경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<개정 2024.3.1.>
4. 교류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제한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 그에 부합하는 학생 <개정 2024.3.1.>
5. 그 밖에 각 교육과정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「수강편람」으로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4.3.1.>

제5조(지원 신청 시기 및 서류) 지원자는 정해진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과장과 학장을

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1. 복수(공동)학위과정 지원서 1부 <개정 2024.3.1.>
2. 서약서 1부(외국대학에 한함) <개정 2024.3.1.>
3. 그 밖에 필요한 서류 <개정 2024.3.1.>
4. <삭제 2024.3.1.>
5. <삭제 2024.3.1.>
6. <삭제 2024.3.1.>

제6조(선발절차 및 인원) 복수(공동)학위과정 지원자에 대한 선발 절차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심사는 서류 평가로 한다.
2. 제2차 심사는 제1차 합격자에 한정하여 면접을 실시하되,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심사할 수 있다.
3. 선발인원은 교류대학과의 협약에서 정한 인원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의 조건에 따라 교류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24.3.1.]

제7조(학점인정) ① 지원자는 교류대학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-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류대학의 규정에 따르며, 학점 및 성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4.3.1.>
- ③ 본교 재학 중 외국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/2 이내로 한다.
- ④ 복수학위 교류학생은 본교에서 6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 「수강편람」에 따른다. <개정 2015.11.24., 2024.3.1.>

제8조(등록 및 학위수여) ① 지원자 및 교류학생은 본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1., 2024.3.1.>

- ② 교류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양교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. 이 경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이 본교의 복수전공, 부전공, 융합전공, 연계전공, 마이크로전공 등의 이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4.3.1.>
- ③ 지원자 및 교류학생은 교류대학 수학 중 양교 총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으며, 학적변동 신청은 학생 소속 대학의 학칙 및 학사일정에 따른다. <개정 2024.3.1.>

제9조(준수사항) ① 교류학생은 본교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
- ② 교류학생은 우리나라와 교류국가의 출입국관리법 및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 <개정 2024.3.1.>
- ③ 교류학생은 교류대학 수학 중 양교(본교) 총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. <개정 2024.3.1.>

④ 학생은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및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3.1.>

제10조(기타) ① 교류대학의 수학경비는 양 대학 간 협약에 따른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 규정 및 교류대학과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.

[본조개정 2024.3.1.]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4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복수(공동)학위과정 지원서

성명	한글		소속	
	영문		학번	
			생년월일	
주소				
연락처			E-메일	
지원대학교(국가)				
희망 전공 또는 학과				
위 본인은 ○○대학과의 ○○학위과정 이수를 지원합니다. 년 월 일 지 원 자 : (인)				
위 학생은 ○○대학과의 ○○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. 년 월 일 학부(과)장 : (인) 학 장 : (인)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서 약 서

성 명		학 번	
대 학		학과 학년	
교류대학			
교류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		

위 본인은 전주대학교 학생의 자격으로 위 파견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자 보호자 연명으로 본 서약서를 제출하며, 해외○○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, 교류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1. 해외○○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우리나라와 _____국의 제반 법규는 물론 전주대학교와 교류대학교의 학칙이나 규정, 현지 지도교수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.
2. 해외○○학위과정 이수기간 중 일체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겠으며, 안전에 유의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는 교류대학교와 본 대학교 학과장에게 연락을 취하겠습니다.
3. 전주대학교의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본 인 : (인)

보호자 : (인)

전 주 대 학 교 총 장 귀 하